

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

1. 생계지원 금액

(원/월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 원 금 액	783,000	1,286,600	1,644,000	1,994,600	2,324,400	2,636,700

※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1,000원씩 추가 지급

※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

2. 의료지원 한도액

300만원 이내

3. 주거지원 한도액

(원/월)

지 역 \ 가구원 수	1~2인	3~4인	5~6인
대 도 시	398,900	662,500	874,100
중 소 도 시	299,100	435,600	574,200
농 어 촌	189,000	250,500	330,000

※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 마다 대도시 105,800원, 중소도시 69,300원, 농어촌 39,800원씩 추가 지급

※ 대도시: 특별시, 광역시의 "구"(도농복합 "군" 포함), 특별시

중소도시: 도의 "시"와 세종특별자치시

농어촌: 도의 "군"

4.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

(원/월)

입소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552,000	941,700	1,218,400	1,494,100	1,770,800	2,047,400

※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86,400원씩 추가 지급

5. 교육지원금액

(원/분기)

구 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지원금액	127,900	180,000	214,000원 및 수업료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·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
6. 그 밖의 지원금액

(원/월)

지원종류	연료비	해산비	장제비	전기요금
지원금액	150,000	700,000	800,000	500,000 이내

※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

7. 재산의 합계액 기준

-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(한도 범위 내)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(단,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(戶)에 한하여 적용).

※ 산식: (조사결과의 총액)-(공제액)≤(기준금액)

(천 원)

지역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	69,000	42,000	35,000
기준금액	241,000	152,000	130,000

※ 대도시: 특별시, 광역시의 "구"(도농복합 "군" 포함), 특별시

중소도시: 도의 "시"와 세종특별자치시

농어촌: 도의 "군"

8. 재검토 기한

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25-210호, 2025. 12. 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.